임대차관리지침

제정 2016. 1. 1 개정 2017. 2.28 시행 2017. 3.10 개정 2019.12.23 시행 2020. 1. 1 개정 2020.12.30 시행 2020.12.31 개정 2021. 7.30 시행 2021. 8. 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고정자산 운영관리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자산의임대차 및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 021.7.30.>

- 1. "임차인"이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.
- 2. "입주자"란 건물의 임차인 또는 그 임직원이나 종업원을 말한다.
- 3. "업무시설"이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4. "근린생활시설"이란 일반음식점, 편의점, 커피숍 등 생활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5. "대관시설"이란 회의장, 회견장, 전시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

말한다.

- 6. "공용시설"이란 전기, 기계, 경비, 위생, 주차 등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공여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시설사용"이라 함은 대관시설, 교육시설 등(연수원시설을 제외한다)을 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대상 및 범위) ①자산의 임대차와 시설사용에 관하여 법령 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②임대차와 시설사용에 관하여 이 지침과 달리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임대차관리자) ①총괄관리자는 자산의 임대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, 하위관리자로 부문관리자와 단위관리자를 둔다.
 - ②부문관리자는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각 단위관리자를 지휘·감독한다.
 - ③단위관리자는 자산의 임대차와 시설사용 및 입주자, 사용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제5조(임대차관리자의 의무) ①임대 및 시설사용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임차인 및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수익성 제고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임대자산과 임차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③임대관리자는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.
- ④임대관리자는 시설관리지침 제18조에 따라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.
- 제6조(위탁운영) ①자산의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대관시설에 한하여 규정 제28조 제2항 및 제41조에 따라 자산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8>
 - ②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, 계약상대방과 합의하여 정한다.
 - ③위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영지침 제5장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12.30.>
 - ④위탁수수료는 해당 시설의 임대료 수준과 수익성,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 <신설 2017.2.28>
- 제7조(위탁운영의 관리) ①부문관리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관하여분기 1회 운영현황을 감독하여야 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위탁운영시설의 위생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2장 임대관리

제1절 통칙

- 제8조(계획수립)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 - 1. 임대관리 기본계획
 - 2. 자산별 임대현황(공실률, 임대료, 계약기간 등)
 - 3. 임대촉진 계획
 - 4. 임대관리 관련 소요예산
 - 5. 다음연도 추정임대료 등 임대료 증감에 관한 사항
 - 6. 임차자산 현황
 - 가. 임차계약현황
 - 나. 신규(갱신 포함) 임차 수요
 - 7. 연간 주요계획 추진 일정
- 제9조(임대료 등의 조사·분석) 부문관리자는 임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이를 제8조의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1. 임대시장 동향 분석
 - 2. 주변지역 임대시세 조사
 - 3. 관리비 등 그 밖의 임대조건 책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

제2절 임대

제10조(경쟁입찰에 따른 임대) 자산의 임대방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

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정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7.2.28>

- 제11조(수의계약에 따른 임대) ①단위관리자는 수의계약에 따라 자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별지 1의 임차의향서를 받아야 한다.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 - ②제1항의 임차의향서를 접수한 단위관리자는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임대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. 이 경우 통지 전에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임차목적의 타당성
 - 3. 임대목적물의 활용가능성 등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③동일한 업무시설에 대한 복수의 의향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.
 - 1. 방송사, 방송제작사, 방송관련단체, 광고회사, 광고유관단체
 - 2. 기타 미디어 진흥,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
 - ④그 밖에 수의계약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영지침 제 57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2조(임대계약) 임대계약은 계약서에 의하며, 단위관리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임대차계약서)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한다.
 - 1. 임차인의 표시
 - 2. 임대목적물에 관한 사항
 - 3. 임차목적
 - 4. 임대기간
 - 5. 임대보증금,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
 - 6. 납부기한, 연체료에 관한 사항
 - 7. 손해배상약정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- 제14조(임대단위) 임대는 층 단위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대촉진 및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5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 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1.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
 - 2. 임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당해 부동산 보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
- 제16조(임대면적) 임대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용면적과 1/전용률의 곱으로 산출한다.
- 제17조(계약규정의 준용)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운영지침 제5장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2.28>

- 제18조(임대보증금) ①단위관리자는 임대자산의 보호와 미납 임대료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한다.
 - ②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0개월분 이상으로 한다. 이때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상당 금액을 공 제한 금액을 수납한다.
 - ③임대보증금은 점유개시 또는 입주예정일의 3일 전까지 현금(자기 앞수표를 포함한다)으로 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9조(임대료 등) ①자산의 임대는 월임대료와 월관리비에 의한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산 수익성 제고 또는 공익적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세계약 또는 보증부월세 형태의 임대를할 수 있다. <개정 2017.2.28>
 - ②임대료는 자산별 주변 임대료 시세, 임대시장의 동향, 임대시설의 용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.
 - ③관리비는 임대자산의 관리 현황, 임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 -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, 전세보증금은 월임대시 연 임대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2.28>
- 제20조(주차장이용) ①주차장은 건물별 주차가능대수 및 건물별 임대면적, 입주자수, 입주자 이외의 건물 이용에 따른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배정한다.

- ②제1항에 따라 배정된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입주자 이외의 시설사용자 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주차장사용료 등 그 밖에 주차장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차장 관리기준으로 정한다.
- 제21조(특별유지관리비) 단위관리자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 또는 시간외 냉난방 등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한 경우 에는 별도의 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임대료 등의 할인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일부를 최대 할인율 30%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 비는 할인할 수 없다. <개정 2019.12.23.>
 - 1. 방송사, 방송제작사, 광고회사
 - 2. 방송관련단체, 광고유관단체
 - 3. 기타 미디어 진흥, 방송 및 광고 산업에 기여하는 업체
 - 4. 임대촉진 등 임대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 - ②할인비율 또는 할인금액은 임차인, 임대면적, 임대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목적물 자산 단위별 계약마다 정한다. <개정 20 19.12.23.>
- 제23조(임대료 등의 증감) ①임대기간 중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②제1항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장래의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다.
 - 1. 임대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본 건 임대업에 대한 조세·공과금이 현저히 증액되었거나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
 - 2. 임대목적물의 제반 시설의 개량 및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상승되었을 경우
 - 3. 물가상승 또는 주변시세, 경제사정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
- ③제2항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12.30.>
- ④제2항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.
- ⑤제3항·제4항은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임대계약에 한해 적용한다.
- 제24조(임대료·관리비 수납) ①임대료와 관리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유지관리비는 예외로 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매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며, 임 차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제1항 단서의 특별유지관리비는 발생월 기준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임차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

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입금토록 한다.

- 제25조(연체관리) ①부문관리자는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총괄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 요청은 서면에 의한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을 1회 이상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독촉은 구두로 할 수 있다.
 - ③납부기한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 3.> <개정 2020.12.30.>
 - ④제3항의 연체기간은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.
 -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독촉기간 내에 납부를 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제26조(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) ①단위관리자는 임대기간 만료 6 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대기간을 포함 한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는 경우 단위관리자는 「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」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갱신요구의 수용여부를

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 전에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- ③전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단위관리자는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라 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 및 보증금,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감여부를 결정하고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지 전에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7조(임대인의 갱신거절과 법정갱신) ①단위관리자는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 또는 임대조건의 변경 여부 등 을 결정하여 통지하며,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계 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라 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원상복구 할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,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, 그 해지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제28조(임대계약의 종료) 임대계약은 해지 또는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

료된다.

- 제29조(임대계약의 해지) ①총괄관리자는 임차인과 합의에 의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②총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- 1.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액이 3기의 임대료 액에 달하는 때
 - 2.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임대목 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- 3. 공사의 승인 없이 임대목적물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 - 4.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- 5. 그 밖에 임차인이 무단 전대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상 중요한 의 무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
 - ③임대계약 해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하며,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④임대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전차인에 대해서도 제 3항 통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.
- 제30조(해지의 효력) ①임대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서면이 도달한 때 발생한다. 다만, 전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해지의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②전조 제4항에 따라 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도 전항 단

서와 같다.

- ③단위관리자는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31조(목적물 반환 등) ①임대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원상복구의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원상복구 여부 및 시설물의 멸실·훼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2의 원상복구 (물품반환)확인서를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임대보증금의 반환) 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체임대료, 연체이자, 목적물 멸실·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임대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공제하고 반환한다.

제3장 시설사용

- 제33조(시설사용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.
 - 1. 정치 집회 목적을 가진 경우
 - 2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

집회를 목적으로 한 경우

- 3. 그 밖에 시설 등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
- 제34조(시설사용) ①대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신청서를 접수한 단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 후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시설사용목적의 타당성
 - 2. 시설사용 인원의 수용가능성
 - 3. 시설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사용목적 달성 가능여부
 - 4. 기존 입주자 및 기존의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
 - 5. 기존 예약과 중복 등 사용 가능 여부
 -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예약이 된 것으로 본다.
 -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통지하는 경우에 이용안내, 사용료, 연체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같이 고지하여야 한다.
 -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2. 공사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
 - 3. 사회공헌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경우

제35조(사용료 등) ① 대관시설 등의 사용료는 주변 유사 시설의 시세

등을 고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.

- ②대관시설별 사용인원은 시설의 규모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- 제36조(예약보증금) ①장기대관의 경우 시설사용에 대한 승인이 확정된 후 사용료 총액의 10%를 예약보증금으로 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약보증금을 수납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신청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 예정일 당일 및 그 이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.
 - 1. 사용 예정일(0시 기준) 48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: 100%
 - 2. 사용예정일 48시간 전부터 당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: 50%
 - 3. 태풍, 폭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: 100%
- 제37조(사용료 수납) ①단위관리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료 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, 사용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잔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②사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납한다.
 - ③사용료 납부기한의 연장과 연체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25조 제1항, 제3항, 제4항을 준용한다.
- 제38조(원상복구 등) ①단위관리자는 사용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시설 등의 멸실 또는 훼손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.
- ④제3항의 경우 부문관리자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사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에 상당한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.

제4장 임차관리

- 제39조(임차의뢰) ①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부서의 장(이하 "수요부서장"이라 한다)은 부동산임차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. 이때 총괄관리자는 의뢰대상자이면서도 수요부서장이 될 수 있다.
 - ②부동산 임차를 의뢰를 받은 총괄관리자는 이를 심사하여 다음 연 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40조(임차계획서) ①전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임차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임차 목적
 - 2. 임차용도 및 그에 따른 필요면적
 - ②수요부서장은 임차를 희망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, 해당부동산에

관한 세부사항을 임차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- 제41조(사전조사) 임차관리자는 임차목적물의 선정에 앞서 대상 부동 산의 위치, 권리 관계, 소유권 현황,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설정 여부, 시설 여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임차목적물 선정기준) ①임차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임차목적물을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없고 임차보증금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
 - 2. 교통여건 및 건물 지명도 등이 양호하여 민원인 방문이 용이한 지의 여부
 - 3. 임차비용이 적정하고 지속적·안정적인 임차가 가능한지의 여부
 - 4. 냉·난방, 주차시설 등 건물의 시설 여건이 업무수행이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
 - 5. 표준면적 확보가 가능하고 입주기간 중 임차면적의 증감이 용이 한지의 여부
 - ②제40조 제2항에 따라 수요부서장이 임차를 희망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희망건물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다.
- 제43조(임차계약) ①임차계약은 서면에 의한다.
 - ②임차관리자는 임차계약서 작성 시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 19조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44조(권리보전조치) ①임차관리자는 임차보증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민법」 제621조 임차권등기 또는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 대항력 등 채권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임차목적물에 선순위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임차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차보증금 보전을 위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.
 - ③임차목적물에 임대인 이외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쟁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전 및 임차목적물 대체 등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5조(임차계약의 갱신·종료) ①부문관리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수요부서의 장이 임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목적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협조 요청하는 경우, 임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차계약의 갱신을 총괄관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②의뢰를 받은 총괄관리자는 임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계약의 갱신여부를 합의하여 그 결과를 수요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괄관리자는 최초의 갱신 의뢰를 새로운 임차 의뢰로 간주하고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장 기록관리 등

- 제46조(기록관리) ①부문관리자는 임대차관리대장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.
 - ②단위관리자는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생순서순으로 기재한다.
 - ③단위관리자는 임대차에 관한 계약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17.2.28>

이 지침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2.23.>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

경우에는 제22조 제1항의 적용을 유예한다.

부 칙<2020.12.20.>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7.30.>

이 지침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

임차 의향서

(<u>임차인</u>)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, 아래의 조건을 수용하고 계약(신규, 재계약)을 체결하고자 임차 의향서를 제출합니다.

입주회사(단체)											
임 대 건 물			<u>임대목적</u>	물 건물	<u>명</u> , ()층, (□업무, □근린생활)시설					
임대차 면적		m²	전용 m², 공용 m²								
임대차 조건	()층	월임대료	₩		임대차 보증금	₩	월관리비	₩		
	적용기준		m²당		원	월인	대료x10	m²당	원		
임대차기간			20 .		~ 20						
기 타		o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o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 100원미만 절사 o 임대차기간은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									

※첨부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끝.

20 . . .

입주회사(단체) : , 대표자 : (인)

(담당자: , 연락처:)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

[별지 2]

<u>원상복구(물품반환)확인서</u>

년 월 일

입주사 상호								대표	대표자				
입주일자			퇴거(예정)일자					사용	사용층				
입주시 시설공사현황													
퇴거시 점검내용				훼손(발급) 수량		원상복구 (회수)여부		점검자	확인자		확인 일자		고 복구비)
Д													
스 설 													
							_						
공													
사													
관													
련													
기													
타													
사													
· 항													
으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근거 :													
<u>기타특기사항</u>						구 분				단	가	금	액
				7년기대				도시가스					
						냉(난)병		(입망n 전	η/시간) 기	'시간) 기			
			관리비				_	선 기 (kw/h)					
최종확인자		별도					시간외 전등						
 관 리 부: (인)				부과		전 기			별도전력				
관리사무소 : (인)													
입 주 사 : (인)						합			계				
		(-/										I	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